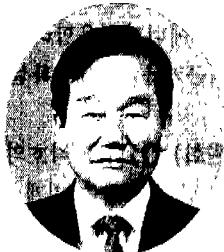


대행업 미수금 청구소송 사례



글/박희택 (대한전기안전관리 대표이사)

자가용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대행사업은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전기기사 자격증을 가진 자가 전기에 대한 학문과 오랜 경험을 토대로 자격증을 가지고 전기사업법에 근거하여 자생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자가용 전기설비의 규모별로 정해진 가산점의 합계가 전기기사 1인당 60점을 넘을 수 없어 수입의 한계가 있고 건설업이나 제조업처럼 일생의 승부를 걸 만한 큰 사업이 되지 못한다.

전기기사 1인당 월매출액이 300만원인 경우 임대료, 관리비, 인건비, 차량유지비, 각종 보험료, 세금, 비품, 소모품비, 통신비, 접대비 등을 N분지 1로 분담하면 약 100만원이 약간 넘는 지출이 생긴다.

결국 전기기사 1인당 200만원 정도가 월수입이 되는데 이것을 봉급자의 급료로 환산하면 100만원 정도가 된다. 왜냐하면 봉급생활자에게는 연400~500%의 상여금과 산재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복리후생비 등을 모두 합하여 12월로 나누어야 월평균 수입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예로 보아 대행업은 자가용 전기설비에 상주근무하는 정도의 월수입에 지나지 않는 사업이다. 그런 반면 좀더 자유롭고 정년퇴직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항상 수용가 관리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전기인이 수용가 점검 방문시 “나는 이 회사에 상근하지 않는 촉탁직원입니다.”라고 말하듯이 점검 수수료 미수

금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수수료는 바로 우리의 급료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특히 수용가의 장기 미수금 발생은 개인과 사업경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는 수용가의 장기 미수금 청구소송 사례가 있어 대행업 종사자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그 내용을 소개한다.

1991년 8월 하순 250kW의 수전설비를 갖춘 서울 용산구소재 S기업사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이후 10개월 동안 A라는 점검자가 청구용 세금계산서를 수차례 걸쳐 전달하면서 점검 수수료 미수금 납부를 요청하였으나 청와대니 안기부니 하는 위협성 말로 떤정을 하면서 점검 수수료 미수금을 납부할 반응이 보이지 않아 필자가 수용가 점검을 자원하였다.

첫 점검에서 점검 수수료 미수금 납부를 직접 독촉했지만 사업부진을 이유로 거부하기에 인건비도 지불하지 못하는 사업이라면 빨리 정리해서 사회에 끼치는 피해를 줄여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하고 회사로 돌아와서 곰곰히 생각하였다.

대화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사건으로 판단하고 법적인 절차를 밟기로 하였다.

소송의 1단계로 공문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참고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첫 공문은 겸손하고 정중하면서 저자세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판사도 볼테니까.

[참고 1]

천안(기) 제92044호 (514-9382)	1992. 8. 8										
발 신 : 강남구 신사동 576-9 송전빌딩 303호 (주) ○○전기안전관리											
수 신 : ○○기업사 대표											
제 목 : 전기설비 안전관리대행 수수료 청구											
귀하의 건강과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 저희 회사에서는 귀사의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대하여 1991년 9월 1일 이후 현재까지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제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습니다.											
2. 그러나 귀사에서는 계약이후 11개월이나 지난 지금 까지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를 한번도 납부하지 않으셨습니다.											
3. 저희 회사는 전기기사 국가기술자격 소지자들이 모여 기술보국의 충심으로 귀사의 전기설비를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점검하고 안전관리를 하는 영세한 인건비 사업체이오니 저희 회사를 후원하신다는 견지에서 수수료를 완납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table border="1"> <thead> <tr> <th>기 간</th> <th>월 수 수 료</th> <th>제납수수료</th> <th>부가가치세</th> <th>합 계</th> </tr> </thead> <tbody> <tr> <td>91.9 ~ 92.7</td> <td>80,000원</td> <td>880,000원</td> <td>88,000원</td> <td>968,000원</td> </tr> </tbody> </table>		기 간	월 수 수 료	제납수수료	부가가치세	합 계	91.9 ~ 92.7	80,000원	880,000원	88,000원	968,000원
기 간	월 수 수 료	제납수수료	부가가치세	합 계							
91.9 ~ 92.7	80,000원	880,000원	88,000원	968,000원							
끌											
(주) ○○전기안전관리 대표이사 ○○○											

그 후에도 전혀 답변이 없어 좀 더 강한 공문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참고 2)을 발송하였다. 역시 답변이 없었다. 이번에는 안전관리 대행계약해지 통보를 공문으로 작성하여 내용증명(참고 3)을 발송함과 동시에 서울지방법원 소액심판소 (500만원 미만의 민사사건 취급)에 (참고 4)의 소장을 접수시켰다.

피고가 첫 공판에 불참했고 소환장(참고 5)을 받고도 2차 공판까지 불참함으로써 우리회사가 승소(참고 6)하였다. 또한 고소장 접수와 병행하여 협회와 관할구청에 수용가 대표자의 서명, 날인 없이도 해임확인신청 및 해임신고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참고 2]

천안(기) 제 92053호 (514-9328-5)	1992. 10. 01
수 신 : ○○○기업사 대표	
발 신 : 강남구 신사동 576-9호 송전빌딩 303호 (주) ○○전기안전관리 대표이사 ○○○	
제 목 : 전기설비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연체분 납부 독촉	
1. 귀하의 건강과 귀사의 사업이 일의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천안(기) 제 92044호 (1992. 8. 8.)에 의거 전기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납부를 촉구한 바 있으나 귀사에서는 1991. 8. 27 계약 이후 한번도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무려 13개월분이 연체되었습니다.	
3. 당사에서는 귀사를 위하여 용산구청에 공사계획신고와 안전관리담당자 선임신고를 이행했고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사용전 검사를 마치게 하는 등의 대관청 업무외에 매월 1회씩 전기사업법에 의한 점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므로 귀사에서는 13개월분의 수수료와 부가가치세를 합한 1,144,000원을 '92년 10월 15일 까지 완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만약 귀사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으시면 당사에서는 부득이 11월부터 귀사의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중단하고 이에 대한 형사적 연책을 위하여 관할 관청에 보고하고 또한 타 동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국전기안전관리대행업 협의회에 이러한 사실을 보고할 수 밖에 없음을 통보합니다.	
5. 이 경우 귀사는 전기사업법 제 45조 제1항, 제2항 및 제 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하지 않음으로써 동법 제 69조 제 8항의 규정에 의하여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장기화하는 경우 관청의 요청에 의하여 전기공급이 중단되게 될 것입니다.	
6. 체납 수수료의 수금을 위하여 본의는 아니오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지금 까지 귀사와 당사 간에 좋았던 관계가 이처럼 악화되지 않도록 귀사에서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76-9호 송전빌딩 303호 주식회사 ○○전기안전관리 대표이사 ○○○	

[참고 3]

전안(기)제 92057호 (514-9328-5) 1992. 10. 23
 수신: ○ ○ ○ 기업사 대표
 발신: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76-9 송전빌딩 303호
 (주) ○ ○ 전기안전관리
 대표이사 ○ ○ ○
 제 목: 안전관리 대행계약 해지 통보
 1. 귀하의 건강과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안(기)제 92044호 (1992. 8. 8.) 및 전안(기)
 제 92053호 (92. 10.01.)에 의거 전기안전관리 대
 행 수수료 체납분을 청구한 바 있으나 귀사에서는
 전혀 응답이 없고 1991년 9월분부터 1992년 9월
 분까지 13개월분의 수수료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3. 당사의 경영상 더이상 귀사와의 전기안전관리 대행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해지통보 하니
 별첨서식의 안전관리 담당자 해임신고서에 날인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안전관리 담당자 해임신고서 2부 끝.
 (주) ○ ○ 전기안전관리
 대표이사 ○ ○ ○

달라는 공문을 작성하여 배달증명으로 우송하였다
 [참고 7].

그러나 피고는 본인과 만나 “10만원은 당신이 갖고 50만원을 회사에 입금하면서 나머지 잔금은 탕감이 될 수 있도록 다른 주주들께 설득해 달라”고 요청하기에 “설득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하고 회사로 돌아와 수금전액을 회사에 입금한 후 잔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가집행하겠다는 공문(참고 8)을 발송하였다.

변제기한일 3일 후 피고와 다시 만났더니 30만원을 주면서 “제발 이걸로 끝내자”는 것이었다. 이 금액을 받아 회사로 돌아와 주주회의에서 “나도 더 이상 이 일을 담당하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그 회사도 경영이 어려우니 그동안 도의적인 면에서는 괜찮았지만 이 정도에서 마무리 하자”고 요청하니

[참고 4]

소장

원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76-9 (송전빌딩 303호)
 주식회사 ○ ○ 전기안전관리
 대표이사 ○ ○ ○
 피고: ○ ○ ○ 기업사 대표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청구의 소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금 일백일십사만사천원 (1,144,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원체에 이르기 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위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원고와 피고는 1991년 9월 1일 피고의 전기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 대행계약을 체결(갑제1호증)하고 원고가 피고의 의무사항인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 및 안전관리 담당자 선임신고 절차를 대행(갑제2호증)하여 한국전력공사로 부터 전력을 수전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후 매월 1회씩 피고의 전기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 점검을 시행(갑제3호증)하였으나 여러번의 대행수수료 청구(갑제4호증)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대행수수료를 한번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13개월 분의 대행수수료 금일백일십사만사천원 (1,144,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을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주주들이 이에 찬성해 주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화도 나고 지루했던 이 법적 사건은 이렇게 종결되었다.

사건종결 2개월 후인 4월경 구청의 담당직원이 그 회사를 방문하여 쌍방간에 서로 이해하라고 중재하기에 필자는 부득이 재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으니 꼭 당신과 재계약을 체결해야겠다"는 데는 마음이 약해질 수 밖에 없었다.

대행업은 기술도 중요하지만 성실한 인간관계가 더욱 소중하다고 생각된다. 반면 악덕 기업주에게는 완벽한 승리를 위하여 치밀한 계획의 추진과 인내력

입증방법

1. 갑 제1호증 (계약서)
2. 갑 제2호증 (신고필증 2종)
3. 갑 제3호증 (전기설비 점검기록표)
4. 갑 제4호증 (수수료 청구서)

첨부서류

- | | |
|--------------|--------|
| 1. 위 입증서류 | 각 1통 |
| 2. 회사 등기부 등본 | 1통 |
| 3. 소장부본 | 1통 (끝) |

위 원고 주식회사 ○○전기안전관리
대표이사 ○○○

서울민사지방법원 귀중

[참고 5]

서울민사지방법원 최초의 변론기일 소환장

강남구 신사동 576의 9 송전빌딩 303호

원고 (주) ○○전기안전관리
대표이사 ○○○

사건 92가소506041 수수료

원고 (주) ○○전기안전관리

피고 ○○○기업사

위 사건 변론기일이 다음과 같이 지정되었으니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일시 1992. 12. 8. 10:00

장소 제 민사3층 355호 법정

1992. 11. 18.

법원주사 ○○○ ①

- 주의 1. 기일에 필요한 모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 기일전이라도 증거신청이 가능합니다.
3. 서증을 제출할 때에는 동시에 그 사본 2통을 첨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의 수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그 수에 1을 가한 통수).
4. 중인신문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와 동시에 신문사항의 요령을 기재한 서면 4통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의 수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그 수에 3을 가한 통수).

법원	서울시 서초구	담당	제3단독	전화	안내전화 구내
소재지	서초동 1701-1				530-1785

소액사건심판규칙 5①

2-58

이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대행업체에 종사하는 전기기술인 한사람 한사람이 사회에서 환영받는 사람이 되어 이제 겨우 2년 밖에 안되는 이 사업이 조속히 정착되어 안정된 궤도에 진입하기를 기대하여 본다.

[참고 6]

서 울 민 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92 가소 506041 수수료
원 고	주식회사 ○○전기안전관리 서울 강남구 신사동 576의 9 송전빌딩 303호 대표이사 ○ ○ ○
피 고	○ ○ ○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40의 1 ○○기업사
변론종결	1992. 12.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144,000원 및 이에 대한 1992. 11. 22.부터 원체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992. 12. 8.	
판 사 ○ ○ ○	

[참고 7]

전안(기) 제 92059호 (514-9382) 1992. 11. 27.

수 신 : 용산구청장

참 조 : 산업과장

제 목 : 전기안전관리 담당자 해임 신고 접수 요청

1. 귀하의 건강과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시는 1991. 9. 1. 용산구 한강로 3가 40-1 소재 ○○기업사(대표 ○○○ 수전전압 22.900V, 수전용량 250kW)와 전기안전관리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법에 의한 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나 계약 이후 지금까지 대행수수료를 한번도 납부하지 않아 무려 13개월분이 체납되었습니다.
3. 회사 경영상 더 이상 봉사할 수 없어 별첨과 같이 '92.10부터 전기안전관리점검의 중단과 농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면서 해임신고서 작성을 의뢰하였으나 전혀 응답이 없어 안전관리담당자 해임을 당사에서 신고 하오니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해임신고서	1부
2.	안전관리 선임신고필증(사본)	1부
3.	내용증명2종(사본)	각 1부
4.	관련 공문서(사본)	1부
5.	점검기록표(사본)	각 1부
6.	소장부본(사본)	1부 끝

주식회사 ○○전기안전관리
대표이사 ○○○

7월의 문화인물

[참고 8]

전안(기) 제 93001호 (514-9328-5) 1993. 01. 06.

수 신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3가 40-1
○○기업사 대표 ○○○

발 신 :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76-9 송전빌딩 303호
주식회사 ○○전기안전관리
대표이사 ○○○

제 목 : 부채 청산 요청

- 희망찬 제유년을 맞이하여 귀하의 건강과 귀사의 일의 번창을 기원합니다.
- 귀하는 1992년 12월 11일 부채의 일부인 금 육십 만원을 상환하였으나 수수료 잔금 544,000원과 소송비용 75,000원 및 이자 42,000원 등 함께 661,000원이 미납되었습니다.
- 1993년 1월 30일까지 당사에 대한 귀사의 부채를 청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게서 기한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사건 92 가소 506041. 판결 주문 제3호에 의거 가집행하겠음을 통보 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식회사 ○○전기안전관리
대표이사 ○○○

* 주요행사

기념전시회 : 국립중앙도서관(7.1~7.31) 자전석요
등 4종 및 관련사진

학술심포지움 : 대한의사학회 주관(7.9(금))
14:00~19:00)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대강당
지석영일대기 TV방영 : 7월 26일 교육방송
「한국의 인물－지석영」등이다.



지석영

(1855~1935)

지석영은 1855년에 한의사였던 지익용(池翼龍)의 아들로 태어나 1935년에 81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우두법의 보급과 새로운 의학의 도입에 공헌했던 선각자이다. 그는 나이 28세에 과거시험에 을과로 합격해서 1896년에는 동래부사의 벼슬에 올랐지만 1876년에 일본에 간 수신사 일행의 수행원으로 따라갔던 그의 스승 박영선(朴永善)이 가져온 《종두귀감(種痘歸鑑)》을 받아 종두법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그후 1880년 5월에 김홍집(金弘集) 일행이 2차 수신사로 일본에 가게되자 김홍집에게 간청해 수행원으로 따라가 직접 우두법을 익힌 후 우리나라에 돌아와 우두법 도입에 힘썼다. 1882년에 임오군란(壬午軍亂)으로 한동안 몸을 피했으나 그해 8월에 정국이 비뀌자 지석영은 서울에 돌아와 종두장을 부활시키고 전주와 충청도에서 각기 우두국(牛痘局)을 설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종두를 실시했다.

이외에도 한글보급에 힘써서 《자전석요(字典釋要)》같은 책을 간행해서 한자의 해석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1908년 2월에는 국문연구소위원으로도 임명되었다. 그러나 1910년 8월에 군국적인 한일합병이 되자 일본족의 간곡한 간청을 뿌리치고 대한의 원(大韓醫院)에서 물러나 1935년 2월 81세로 세상을 떠 때까지 조용히 여생을 지냈다.